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상세 안내문

■ 공급개요

- 1) 공급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97-12번지 일원
- 2) 사업명 :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
- 3)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6개동, 총 710세대
- 4) 입주시기 : 2028년 0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5) 공급내역(예정)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080.9668A	80A	80.9668	24.9801	105.9469	4
084.8950A	84A	84.8950	26.0028	110.8978	421
084.9026B	84B	84.9026	26.5646	111.4672	44
084.7881C	84C	84.7881	27.9403	112.7284	110
084.9716D	84D	84.9716	27.3409	112.3125	57
084.9663E	84E	84.9663	26.4855	111.4518	69
134.9990A	134A	134.9990	44.5582	179.5572	1
134.9381B	134B	134.9381	45.2490	180.1871	1
134.9605C	134C	134.9605	44.2054	179.1659	3
계					710

※ 상기 면적은 예정(안)으로 분양승인 이후 확정되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구 분		80A	84A	84B	84C	84D	84E	134A	134B	134C	합 계
장애인	경기도	-	7(35)	1(5)	2(10)	1(5)	1(5)	-	-	-	12(60)
	서울특별시	-	5(25)	-	1(5)	-	1(5)	-	-	-	7(35)
	인천광역시	-	3(15)	-	1(5)	-	-	-	-	-	4(20)
국가유공자		-	6(30)	1(5)	2(10)	1(5)	1(5)	-	-	-	11(55)
중소기업 근로자		-	11(55)	1(5)	3(15)	2(10)	2(10)	-	-	-	19(9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5(25)	1(5)	1(5)	1(5)	1(5)	-	-	-	9(45)
장기복무 제대군인		-	6(30)	1(5)	1(5)	1(5)	1(5)	-	-	-	10(50)
합계		-	43(215)	5(5)	11(55)	6(30)	7(35)	-	-	-	72(360)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함)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지역 배분에 맞추어 해당 지역별 추천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주택형 필히 선택 바랍니다.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요일정(예정)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	계약기간
일자	2025.11.14.(금)	2025.11.19.(수)		2025.11.27.(목)	2025.12.09.(화) ~2025.12.11.(목)
참고사항	당사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시	청약홈 인터넷청약	건본주택접수 (정보취약계층)	청약홈 조회	당사 건본주택 진행
		접수시간 10:00~17:30	접수시간 10:00~14:00		

※ 신청일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상기 일정은 예정(안)으로 분양승인 이후 확정되며, 공급세대, 특별공급 신청일, 입주예정일 등은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받은 해당 주택형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 rowspan="2">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 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안내

문의	☎ 031)264-0710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 견본주택)
오픈예정일	2025년 11월 예정